#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857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화숙, 이병도,

김혜런, 이정인, 김소양,

김용연, 김동식, 서윤기,

오현정, 봉양순 의원 (11명)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법(「장애인복지법」,「장애인치별금지 및 권라구제에 관한 법률」)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, 제재조항에 의한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,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를 규정함(안 제8조의2)
- 나.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인증 시업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3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치별금지 및 권라구제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)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8조의3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인증사업 등)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장소,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과 관련한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
	홍보 및 교육) 시장은 장애인의
	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
	하는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해
	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
	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
	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
	인증사업 등) ① 시장은 보조견
	인식개선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
	<u>공공장소, 식품접객업소 등을</u>
	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
	조치를 취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보조견 인식개선과
	관련한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3(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인증사업 등)을 신설함에 따라 인증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발생할 수 있으나, 인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추계 곤란
  - 제8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)의 경우 기추진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 <참고> 2019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(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중)

○ 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

- 사업내용 : 서울시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홍보콘텐츠 개발 및 계획 수립/ 장애 인식 개선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시행(교통방송, 지하철광고, 서울시 전광판 등)

- 소요예산 : 120백만원

○ 장애인 인권 콘텐츠 개발 및 교육

- 사업내용 : 장애인 인권이해, 인권이슈 및 사례, 인권규범 및 기준 등 인권교육 교재

개발하여 서울시,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, 산하기관, 민간기관, 시민대상 교육

- 소요예산 : 50백만원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첚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-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인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비용추계 곤란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

® 02-2180-7942

e-mail: liz1998@seoul.go.kr